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2-2100-6932, 6935 (FAX : 02-2100-6909)

○ 이메일 : jsshin522@mest.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3-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59호
2. 단체명칭 :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
3. 대표자 : 김혜경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6 플렉시움 304호
5. 주된 사업 : 한중 양국간 민간협력 증진 및 친선교류사업
6. 연락처 : 02-782-0717
7. 등록연월일 : 2013. 3. 14.

●법무부공고제2013-44호

『행정소송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법무부장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약 30여년만인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이 있었고 이후 1994년 개정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 폐지, 행정소송의 3심제화 이외에 별다른 내용의 변경이 없었음
- 이후 국민의 권리의식과 행정형식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법무부는 2007년에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의 심의는 전무하였고 결국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제18대 국회 개원 후에도 2011년 6월 23일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었으나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역시 폐기되었음

- 그러나 1951년 행정소송법 제정으로부터 약 60년, 1984년 전면개정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급변하는 행정현실과 고양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행정소송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
- 이에 행정소송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007년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2011년 11월 15일 14인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약 10회의 전체회의, 약 4회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행정소송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종합 검토하였음
- 본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와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 마련’이라는 목적 아래,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사전권리구제절차 정비,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 행정소송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1) 의무이행소송 도입(안 제4조, 제41조 내지 제47조)

- 분쟁의 발본적·일회적 해결이 가능한 제도로 선진법제에서 대부분 도입
- 현행 권리구제절차(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불완전성 해소 가능
 - ※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부작위)시 행정청에 ‘건축허가명령’을 선고하는 제도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존치함으로써 국민의 소송유형 선택의 자유 보장 및 행정청 스스로의 재처분 기회 보장

(2) 원고적격 개정(안 제12조)

- 현행 ‘법률상 이익’[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은 원고적격 범위를 제한
-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원고적격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

나. 사전 권리구제절차의 정비

(1) 집행정지 요건 완화 및 담보부 집행정지제도 신설(안 제24조)

- 부담적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및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제3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른바 ‘제3자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경우 제3자 보호를 위해 담보제공 규정을 신설
 - ※ 이웃이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

(2) 가처분제도 도입(안 제26조)

- 사전 권리구제절차의 중심인 집행정지제도는 부담적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절차 흠결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처분제도를 마련
 - ※ 기한부 처분(어업면허,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한 갱신처분을 거부할 경우, 판결확정시까지 임시로 어업활동, 체류가 가능하도록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처분 허용

다.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

(1) 소의 변경·이송의 허용범위 확대(안 제22조, 제39조, 제43조, 제51조 및 현행 행정소송법 제7조)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이 어려워 잘못 제소하는 경우 제소기간 도과, 소각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잘못 제소하는 경우 소의 변경을 허용
- 현행 규정은 행정소송의 이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요건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보다 더욱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어, 현행 행정소송법 제7조를 삭제하여 이송을 보다 쉽게 허용

(2) 관할지정제도 도입(안 제9조)

- 사건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해줄 수 있는 제도 도입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관할 법원 선택의 위험 및 불편을 해소

(3)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4항)

- 현행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일정한 위법상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제거 의무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 규정되었으나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 동 제도의 신설로 행정청에 대하여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 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신속하게 적법 상태를 실현하도록 보장

(4) 제3자 소제기 사실 통지제도 신설(안 제16조)

- 법원이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행정처분으로 인해 영향 받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일회적인 분쟁해결을 보장

라. 행정소송의 전문성 강화

● 당사자소송 활성화(안 제3조, 제48조 내지 제52조, 부칙 제1조)

- 성질상 행정소송이지만 편의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던 행정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명시
- 행정처분의 위법성 다툼과 직접 관련된 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법원에서 담당
- 당사자소송 활성화에 따른 관할 혼란 방지, 지원 소재지 국민의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함

마. 기타 사항

(1) 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대상 개정(안 제6조)

- '총무처장관'을 명령·규칙의 성질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으로 개정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기간 연장(안 제23조 제2항)

-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제소기간(안 제21조)과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권익 구제를 확대

(3)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금지조항 삭제(현행 행정소송법 제43조)

- 동 조항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국민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동 규정 삭제

(4) 이해하기 쉬운 법률이 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

- 직접 자기의 법적 이익과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민중소송’의 명칭을 ‘공익소송’으로 표현 변경(안 제3조, 제53조, 제5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법률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를 정비

바. 부칙

- 법 시행일을 공포후 6개월로 함(안 부칙 제1조 본문)

- 다만, 법적 상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당사자소송의 경우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함(안 부칙 제1조 단서)

3. 제출의견

- 행정소송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부 국가송무과, 전화 2110-3522, 팩스 504-1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48호

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통문화 전문 공연장으로서 국립국악원 공연장 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통예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시행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 2조 3. ‘야외공연장(별맞이터)’을 야외공연장(연희마당)’으로 개정하고 ‘4. 풍류사랑방(실내공연장)’을 신설함

나. 제8조의 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 기관이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에 ‘(비수익성 공연 및 행사에 한한다)’의 내용을 추가함

다. 제8조에 ‘④국악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비수익성 공연 및 행사에 한한다)’의 내용을 신설함